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 등 교 육 기 관 의 평 가 · 인 증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2025. 4. 8.)에 맞추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4호, 20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과 관련한 하위 법령 규정을 정비하여 평가·인증 제도의 공백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에 “약학” 과정 추가(안 제2조의2)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기존 의무화 분야인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에 ‘약학’을 추가하여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로 변경

나.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시 “약학” 과정 추가(안 제3조)

의료과정운영학교에 ‘약학’을 추가하여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8. ~ 10. 19.)

3) 행정규제 : 심사예정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 교육과정 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이루어진 약학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인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인증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u>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u> 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u>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u> 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 <u>의료과정운영학교</u> ”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u>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u> ----- “ <u>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u>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u>의료과정운영학교</u> 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④ ----- <u>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u> -----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전단에 따라 재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생략)

2. 제3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

-----.

⑤ -----

---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

1. (현행과 같음)

2. -----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3조(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등) ① (생 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의료과정운영학교</u>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제3조(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의료</u> <u>및 약학과정운영학교</u>----- ----- -----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정책관	
연 락 처	(044) 203 - 6383 / 6911